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태아 성별고지 제한 완화〉

■ 유명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2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명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9.

(3) 회 부 일 : 2024. 7.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해당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성별이 인공임신중절과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나, 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시기를 임신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생 략)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6주----- ----- ----- ----- -----.
※ 시행일 :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태아 성별고지 금지규정은 1987. 11. 28.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및 그 가족 등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태아 성별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음.¹⁾

1)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 이는 1980년대 산전초음파 검사 도입 등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과 맞물려 태아 성 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자,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4헌마1010등 결정에서 구 의료법의 태아 성별고지 금지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헌법불합치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3인, 합헌의견 1인), 이 규정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국회는 2009. 12. 31. 「의료법」 제20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여,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부터 태아 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²⁾

□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2헌마356등 결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단순위헌의견 6인, 헌법불합치의견 3인).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 11. 28.]

2)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임.³⁾ 동 위헌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20조제2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008. 7. 31. 헌법재판소 결정시와 달리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가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 내⁴⁾로서 셋째아 이상도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⁵⁾ 등이 반영된 것임.



자료: 「2023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2.28.

3) [참고] 헌법재판소 2022헌마356등 결정문 일부 참조.

4) 일반적으로 여자 신생아 수 100명 당 남아 신생아수를 기준으로 103~107을 자연적인 범위로 봄.

5) □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기: ① 임신 16주(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 이전 97.7%, ② 임신 10주(태아 유전정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이전 89.8%
-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 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② 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③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자녀계획 때문에(29.0%)

< 성별 출생아 수 및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2013-2023p >

(단위: 천 명,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	계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남 아	223.9	223.4	224.9	208.1	184.3	167.7		139.4	133.5	127.5	117.9
	여 아	212.6	212.1	213.5	198.2	173.5	159.1	147.3	133.0	127.0	121.7	112.1
출생성비	계*	105.3	105.3	105.3	105.0	106.3	105.4	105.5	104.8	105.1	104.7	105.1
	첫째아	105.4	105.6	106.0	104.4	106.5						105.9
	둘째아	104.5	104.6	104.5	105.2	106.1	105.7	105.3	104.8	104.6	104.8	103.1
	셋째아 이상	108.0	106.7	105.5	107.4	106.4	106.1	103.3	107.2	105.8	103.9	108.2

주: * 출산 순위 미상 포함

자료: 「2023년 출생, 사망통계(잠정)」, 통계청, 2024.2.28.

□ 개정안은 태아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현행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현 상황에서 태아 성별고지 제한이 사라지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소수의견(헌법불합치의견)은 남아선호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고,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⁶⁾에서 태아 성별고지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신중절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6)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바127에 대하여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 처벌(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나,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하여 2020. 12. 31.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으나, 2024. 8. 7. 현재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태아 성별고지 금지 규정을 일거에 삭제하기 보다는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2008. 7. 31. 2004헌마1010등)을 내린 것과 달리 2024. 2. 28. 2022헌마356등 결정에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 제20조제2항 태아 성별고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1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평등의식의 향상, 태아 성별과 낙태의 낮은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함이 타당함.
- 또한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성감별이 가능한 임신주수는 16주이고, 그 이전에는 태아의 유전정보 확인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반면 태아 성감별 목적의 검사는 여전히 금지(제20조제1항) 되므로, 태아의 성별고지 시기를 임신 16주로 개정할 실익이 없음.

2) 법무부(입법정책적 결정사항)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참고하고, 개정의 실익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제안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하다면, 16주 이전 성별 고지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음.

3)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헌법재판소 결정은 성별에 대한 선호 사상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국민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내려진 것으로,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위헌 결정에 배치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혹시 모를 낙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함.

5) 성균관(수정수용)

- 현행 32주 이후 성별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16주로 완화하되, 성별고지를 원할 경우 부모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성별 고지 후 일정 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신중검토)

- 자녀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의 입장은 이해하나, 오늘날에도 성별 선호에 따른 낙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법 개정에도 동의하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494